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4. 26.(목) 11:00~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등 2건 =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

1.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2
2.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5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4. 12.
- 나. 발 의 자: 이성복 · 백범영 · 조기원 의원
- 다. 회부일자: 2012. 4.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년 4.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거창 농업인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1) 직거래장터의 사업(안 제3조)

-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참여자 모집
-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정보수집
- 직거래장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2) 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 설치(안 제4조 ~ 제10조)

《구 성》

-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임기는 2년
- 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위원: 군의원 1명, 농촌활력과장, 농업인단체 대표, 기타 전문지식인
《심의사항》

- 직거래 운영방향 결정
- 직거래 품목 및 판매가격기준설정
- 기타 필요한 사항

(3) 농업인직거래장터의 운영(안 제11조 ~ 제17조)

- 운영주체: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법인에게 위탁운영
- 위탁기간: 2년,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 가능
- 수탁자 의무: 재산을 파손·망실했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
상조치
- 위탁취소: 계약조건 위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등
- 관 리 비: 수탁자 부담
- 운 영 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4) 준용규정(안 제18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유통비용과 각종 수수료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서, 법적인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나. 경제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함으로써 적정가격 수준을 제시하고 일반 소매업체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의 폭을 확대시키고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2. 4. 6.

나. 발 의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2. 4. 1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년 4월 26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을 위해 거창군 전 학교급식인원에 대하여 물품구매, 배송 등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시설명: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2) 위 치: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12번지

(3) 규 모: 연면적 1,347㎡ (지상2층)

○ 1층(1,054㎡): 입하장, 냉장·냉동 창고, 소포장실, 출하장 등

○ 2층(291㎡): 사무실, 회의실, 식당, 탈의실 등

(4) 위탁대상 업무

○ 시설: 학교급식지원센터 1,2층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

- 운영: 37개 전 학교 물품구입 및 배송 업무
- (5)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단, 매년(연도말기준)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여부 재결정
- (6) 위탁운영 방식
 - 공급품목의 가격, 생산공급업체 선정, 대행수수료율을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 물품구매, 배송 등 업무 일체 위탁
 - 시설, 기계장비의 사용료 년 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내 사용료 징수 (사업초기임을 감안 3년간 사용료 징수 유예)
- (7) 소요예산
 - 내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비 예산은 필요치 않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본 동의안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을 위해 관내 전 학교 급식인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 나.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